

수원지방법원 2022. 3. 16 선고 2021나507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문성원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정윤환

변 론 종 결 2022. 3. 2.

판 결 선 고 2022. 3. 16.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12. 10. 선고 2020가단54529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2020. 3.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체결하였는데, 위 대금 2억 원은 이 사건 물건의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다.”를 “체결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10행부터 제6면 2행까지의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되었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21억 원 상당인데,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은 16억 5,600만 원이므로, 위 신탁계약이 만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환가되는 경우 잉여재산이 발생할 것이어서 소외 회사는 수탁자 F에 대하여 정산금 등 위 잉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권리를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소외 회사는 1,284,083,509원 상당의 매출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외 회사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에 대응하여 열풍기의 제조상 결함 또는 설치상 하자 등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및 원고와의 성과보증계약상 에너지절감량 산출 및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외 회사의 경영계획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의 운영을 위해 제품의 생산을 위수탁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외 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여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차용금 352,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건의 시세인 154,133,000원을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은 상당한 가격을 정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이다.

2) 판단

가)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정산금 등 잉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위 권리는 그 발생 시기 및 발생 여부와 그 가액이 불확정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매매 당시의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재산명시 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카명121호)에서 2020. 6. 22. 제출한 재산목록에 거래처에 대하여 합계 1,284,083,509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가진다고 기재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목록에 기재된 채권 중 거래처 H에 대한 1,073,989,300원의 미수금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소외 회사가 소를 제기하여 2019. 1. 2. 일부 승소하고 그 판결이 2019. 2. 8. 확정되기에 이르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5120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6510호), 위 재산목록 제출 당시까지 위 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위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적극재산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외 회사의 경영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17억여 원, 피고에 대하여 3억 5천만 여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재산으로는 이 사건 물건 외에는 소파, 의자, 에어컨, 컴퓨터 등 가사비품과 사무가구, 지게차 1대, 2억 8천만 여원 상당의 거래처 미수 채권(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소외 회사가 작성한 재산목록상 미수금 채권 1,284,083,509원에서 H에 대한 1,073,989,3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에 불과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던 점, ② 소외 회사의 위와 같은 재산 내역에 비추어 이 사건 물건은 환가가 용이하여 실질적 담보가치가 있는 유일한 주요 자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물건의 매도로 소외 회사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가 심해진 점, ④ 피고는 스스로 소외 회사에 대한 3억 5,200만 원의 대여금을 상환받기 위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의 대표이사로 2019. 5. 1. 취임한 I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2006. 9. 4.부터 2009. 9. 4.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4. 2. 26.부터 2018. 12. 31.까지 재직했었고,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8. 12. 31. 취임한 J은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9. 4. 23. 사임한 점, ⑥ 피고는 소외 회사가 경영계획의 일환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매매계약상 가액이 적정가격이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원고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임원의 동일성에 비추어 그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넉넉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욱, 판사 안좌진, 판사 이혜미

(별지)

유체동산 목록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번호	설비명	수량	제조사	제정년도(구해년도)	비고
1	상행기 #1호기	1식		2006	2층구조/컨트롤판넬 포함
2	상행기 #2호기	1식		2007	3층구조/컨트롤판넬 포함
3	컨조로 #1호기	1식		2006	4층구조/컨트롤판넬 포함
4	컨조로 #2호기	1식		2007	5층구조/컨트롤판넬 포함
5	열파	1식			승고/ 컨트롤판넬 포함
6	해어골무래서	100hp 1기		2009	
7	해어골무래서	100hp 1기		2016	
8	해어골무래서	50hp 1기		2005	
9	친환경물 + 오차/ 열파	4기		2007	승고
10	국방기	2기		2006	소형1호 2002년 인수부터
11	수전 및 배전설비	1식		2005	900kw
12	ANAC-2/기화기	1식		2008	30톤
13	식료냉장고				
	냉동냉장고(합계→그늘도)			2019	승고
	냉동냉장고(합계→그늘도)			2019	신용
	냉동냉장고(그늘도→저냉도)			2014	승고
	냉동냉장고(저냉도→승고)			2017	승고
	냉수미송정기(승수조→열파)			2019	신용
	냉수미송정기(승수조→저냉도)			2019	신용
	그늘식냉장고				
14	냉각기	3대		2004	승고
15	대역물리표도	3대		2011	
16	열파기	1대		2014	
17	식재료 3톤	1대		2010	

